

다문화 · 상호문화협동과정 IRB 관련 지침 정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 회신 기반)

1.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기본 원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뷰·설문조사를 포함한 모든 인간대상연구는 연구 시작 전에 IRB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모든 연구를 전면적으로 심의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한이 있어 IRB 미신청에 대한 법적 제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학위논문에서는 학과의 내규나 연구자의 일정에 따라 IRB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이화여자대학교의 공식 규정

본교의 공식 문서에는 졸업논문에 대한 IRB ‘필수 신청’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기준은 “연구 시작 전에 IRB 승인을 받도록 안내(권고)”하는 수준이며, 학위논문 자체를 IRB 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3. 다문화 · 상호문화협동과정(IRB 관련 내규)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은 IRB 신청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다.

IRB가 필수 요건이 아니며,

- 연구자의 연구 주제와 필요성
- 일정 및 연구 설계
- 연구윤리 준수 필요성

을 고려하여 지도교수와 상의 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학과 단위의 IRB 적용 가능성

학과가 자체적으로 IRB 의무 여부를 규정할 수는 있으나, 현재 본교에서 IRB를 학과 차원의 필수 요건으로 정한 사례를 극히 드물다.

실제 적용 사례로는 간호학과가 학과 특성상 IRB 심의를 필수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내부적 내역 차원이다.

5. IRB 미승인 학위 논문의 처리 및 후속 조치

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 기록에 따르면, IRB 미승인으로 인해 졸업논문이 문제가 된 사례는 없다. 다만, IRB는 원칙적으로 연구 시작 전에 승인을 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사후 승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술지 투고 시 IRB 승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게재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